

의안번호	제 697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7년 9 월 29 일

2018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697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9. 29.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출연목적

-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충북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(17. 2. 17),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교육,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
출연 예정금액 : 1,223,300천원(도비100%)
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- 산출근거
 - 재단 운영비 : 1,223,300천원(인건비 및 경상비, 사업비)

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7년			2018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1,135,000	300,000	835,000	1,223,300	923,300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여성정책관 성주류화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전정애	장기봉	송현숙	220-3922

기관명	충북여성재단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장 : 이시중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(현원/정원) 13/13 (주요사업)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·가족 역량강화 교육 여성·가족 정책조사 연구 및 지원, 성주류화 과제 컨설팅 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자·출연 예정금액 : 1,223,300천원(도비 100%)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		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17년 예산액	2018년 요구액*	재원별				
					계	국 비	도비	시군 비	기타
	계		1,135	1,223	1,223		1,223		
기본재산	3~12월	100							
재단운영비	3~12월	1,035	1,223	1,223		1,223			
출자·출연 필요성	○ 지역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·출연하고자 함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※ 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2월 설립한 충북여성재단의 활성화를 통하여 대내외 여성정책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○ 성평등 충북도 실현을 위한 여성·가족정책 연구 기능 강화 및 안정적인 교육·연구를 비롯한 충북 여성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. ○ 특히, 2018년도에는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일·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캠프 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조직표, 인력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(경영평가)

- 설립 후 1년이 지난 후 경영평가 실시 예정

○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

- 재정사업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은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실정에 적합한 여성정책의 연구·개발과 충북여성의 능력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.
- '17년은 출범 초기 재단 조직의 조기 정착 시기였으며, '18년은 충북여성재단의 안정화와 여성의 권익증진, 교육·연구,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도약할 시기임.
- 특히, 도내 여성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축제와 일·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캠프 프로그램 등 사업 추진을 통하여 충북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함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	2017년 예산액(최종) (C)	2018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
합 계	1,135,000	1,223,300	1,223,300		88,300
기본재산	100,000				△ 100,000
재단운영비	1,035,000	1,223,300	1,223,300		188,30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북여성재단

설립근거	- 민법 제32조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			전화번호 : 043-285-2421			
주요연혁	- '17. 2. 17 : 충북여성재단 설립		기관형태	출연기관(재단법인)			
인원현황	계	정규직		비정규직			
	16	12		4			
임원구성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권○○	충북 여성재단 대표이사	재임기간			
	당연직이사	서○○	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	재임기간			
	선임직이사	백○○	한국교원대학교 교수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소○○	충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손○○	충북여성미술작가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연○○	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오○○	충북여성행복지원단 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오○○	대한미용사회충북지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유○○	동양일보 상임이사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한국걸스카웃충북연맹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이○○	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정○○	충북여성연대 공동대표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최○○	진천여성단체협의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선임직이사	한○○	충북간호사협회장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
	당연직감사	전○○	충청북도 여성정책관	재임기간			
선임직감사	신○○	회계사	2017. 02. 17 - 2019. 02. 16				
조직	 <pre> graph TD A[이사장(도지사)] --> B[대표이사(비상근)] B --> C[이사(13명)] B --> D[감사(2명)] B --> E[사무처장(1명)] E --> F[정책연구팀(5명)] E --> G[교육운영팀(6명)] </pre>						
주요기능	- 여성정책연구·개발, 여성인력개발 및 교육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사업, 기타 여성관련 사업 추진 등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10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,135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5	2016	2017	재무현황 (백만원) '16.12.31기준	자산	-
	예산액	-	-	1,659		부채	-
	지자체 지원액	-	-	1,135		자본	-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6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-			-		-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여성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여성정책관		출연	1,223,3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개발, 민관 소통 역할 수행
- 지역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의 중심(허브)기능 수행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여성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18. 1월 ~ 12월
- 출연금액 : 1,223백만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충북여성재단 교육 및 연구사업, 성평등·일자리 사업
- 출연근거 :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1,223		
운영재원	1,223		
인건비	458	- 사무처 직원 9명(기본급 및 수당, 퇴직급여)	
경비	232	- 복리후생비, 일반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일반보상금, 1주년 학술심포지엄, 집기구입 등	
사업비	533	- 교육운영, 정책연구,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등	

□ 기대효과

- 지역 여성들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 및 민·관 소통으로 정책만족도 제고
- 여성·가족 정책 현안에 대한 선도적 전략개발을 통한 전문적 성평등 정책 연구 및 시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충북여성재단은 금년도 전액 도비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생 재단으로,
- 도비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, 도비 출연금은 재단 존립을 위한 필수 조건임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부칙 <법률 제12687호, 2014.5.28.>

제6조(출자·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□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제8조(재정지원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